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04
----------	-------

발의연월일 : 2026. 8. 4.

발 의 자 : 김동아 · 박균택 · 정준호
양부남 · 윤준병 · 최혁진
허성무 · 염태영 · 정춘생
안도걸 · 김남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2024년에 시행령의 개정으로 벤처투자조합 중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는 신주 투자분에 대하여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범위가 제한됨.

그런데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은 자산의 60% 이상을 중소·벤처기업의 합병, 구주 인수, 벤처펀드 지분인수 및 출자에 투자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의 중간회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데, 소득공제의 축소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거주자가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이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 “경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제6항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
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
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② ~ ④ (생략)

경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제6항에 해당하
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